

**제2731호**  
**2020. 4. 24.**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 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 
 전화: 3396-4955  
 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0-33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.....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
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-330호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심의회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0년 4월 24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중구의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라.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바. 주거복지위원회의 구성, 회의,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, 수당 (안 제8조~제12조)
- 사. 시행규칙(안 제13조)

**3. 의견제출**

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참조: 중구청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, 전화: 3396-5393, FAX: 3396-8736, E-mail: shwpdls@junggu.seoul.kr)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첨부 :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**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주거복지”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주거복지 지원대상자”란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“구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나. 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
- 다.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
- 라. 그 밖에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·지원하고,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** 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중  
구 주거복지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주거복지사업 계획
3.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

**제6조(주거복지사업)**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거복지 상담·정보제공 및 사례관리
2.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·집수리 등 지원서비스 제공
3.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
4.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
5.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
6.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
7.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

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**제7조(사무의 위탁)**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 
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8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거복지위원회(이하  
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변경·평가 등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

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1.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
- 2. 중구의회 의원
- 3. 민간 주거복지단체(비영리법인·단체)에 종사하는 사람
- 4.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
- 5.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

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,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회의)**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, 진술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, 이 경우 심의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위원의 해촉)**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- 1.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
- 2.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3.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
- 4.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수당)**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